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5. 12.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5. 12.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2023. 3. 2.)을 반영하여 공무원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영 준용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준용(안 제3조의2)
- 나.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사항 정비(안 제4조제1호)
- 다. [별표 1]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복지지원과: 성별영향평가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611호
 - 가) 예고기간: 2023. 4. 10. ~ 2023. 5. 1.(21일간)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영 제8조의2는”을 “영 제8조의2제5항은”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 (현행)

국내 여비 지급표(제3조의2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호를 말함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제1호는 특실 실비, 제2호는 일반실 실비를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 (현행) 삭제<2000. 00. 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2. ~ 7. (생략)</p>	<p>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 -----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p> <p>제4조(준용규정) ----- ----- -----.</p> <p>1. 영 제8조의2제5항은 ----- -----.</p> <p>2. ~ 7. (현행과 같음)</p>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공무원 여비 규정」

-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